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93
----------	-------

제출년월일 : 2016. 10.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개정사유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를 제한하는 현행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제한하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제명 및 조문의 띄어쓰기 적용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표기를 정비 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민투표법, 개인정보보호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 4.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16. 9. 13. ~ 2016. 10. 3.(제출된 의견 없음)
- 나.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 원안동의
- 다. 가정복지과의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6. 10. 11.)
-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바.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주민투표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5조제1항”을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작성기기준일”을 “작성기준일”로, ““마포구””를 ““구””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을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를 “성명·생년월일·주소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별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를 “동별로”로 한다.

제9조 중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또는 체류지·생년월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및 장소”를 “및 열람 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을 “생년

월일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해당부분”을 “해당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열람시에는”을 “열람 시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열람기간·시간 및 열람장소”를 “열람 기간·시간 및 열람 장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1인을 포함하여 7인”을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를 “범위에서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법 제22조”를 “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조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8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 중 “및 법 제13조제2항”을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으로, “구페이지의”를 “구 홈페이지에”로, “또는 게재로써 한다”를 “또는 게재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b>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b>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마 포 구 청 장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li> <li>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li> <li>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ol>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주민투표법」----- ----- ----- -----.</p>
<p>제2조(구의 책무)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u>서울특별시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u>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④ 구청장은 <u>법 제5조제1항</u>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2조(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서울특별시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u> -----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u>제5조제1항</u>----- ----- ----- -----.</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u>작성기준일</u> 현재 서울</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 ----- <u>작성기준일</u> -----</p>

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주민투표 청구서에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

“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성명·생년월일·주소나

② 동별로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열람 기간·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동별로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열람기간·시간 및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

② (생략)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  
-----  
-----  
-----  
-----  
-----  
-----  
-----  
-----  
-----.

② ----- 생년월일을 -----

-----  
-----  
-----  
-----.

----- 해당 부분 -----

-----.

③ ----- 열람 시에는 -----

-----  
-----.

④ -----

-----  
-----  
----- 열람 기  
간·시간 및 열람 장소 -----  
-----.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2. (생략)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 ⑧ (생략)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1명을 포함하여 7명 -----

④ ----- 해당하는 사람 -----

1. 2. (현행과 같음)

3. ----- 인정되는 사람 -----

4. ----- 인정되는 사람 -----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 범위에서 -----

⑩ ----- 운영에 -----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처리기간)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

제13조(처리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해  
당 -----  
-----



는 해당 증명서 교부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생략)

②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

범위에서 한 차례만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2조제2항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별지 제1호서식

② 별지 제2호서식

③ 제6조제2항

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제16조(공표·공고 방법)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구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구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

④ 제8조제2항-----  
----- 별지 제5호서식-----  
-----.

⑤ -----  
----- 별지 제6호서식-----  
-----.

⑥ -----  
----- 별지 제7호서식-----  
-----.

제16조(공표·공고 방법) -----  
-----  
-----  
-----  
-----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 구 홈페이지에 --- 또  
는 게재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p>「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마포구청장 귀하</p>			
<p>※ 작성요령</p> <p>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p> <p>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p> <p>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p> <p>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p>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현행과 같음)	
<p>※ 작성요령</p> <p>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p> <p>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p> <p>3. 주소란에는 도로명파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p> <p>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p>	

[별지 제2호 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 청기간	<p>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p> <p>※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p>		
<p>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년 월 일 마 포 구 청 장 (인)</p>			
<p>※ 작성요령</p> <p>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p> <p>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p> <p>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p> <p>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p>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현행과 같음)	
<p>※ 작성요령</p> <p>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p> <p>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p> <p>3. 주소란에는 도로명파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p> <p>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별지 제5호 서식]

청구인서명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 일자를 기재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마포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 일자를 기재한다.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현행과 같음)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인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상 생년월일을 기재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